서울대학교 창업학점제 운영 지침

제정 2022. 11. 24.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「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」제15조에 따라 학생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"창업학점제" 란 창업활동을 통해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정규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.
- 2. "창업현장실습" 이란 실제 창업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교과목을 말한다.
- 3. "과목책임교수" 란 본교 교원(비전임교원 포함)으로서, 창업현장실습의 담당 교원을 말한다.

제3조(위원회) ① 창업학점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업교육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두다.

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장은 창업지원단장이 되고, 교무부처장, 학생부처장, 연구부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-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1. 창업학점제 신청 승인
- 2. 창업학점제 학점 인정
- 3. 그 밖에 창업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
-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창업기획지원팀장으로 한다.

제4조(운영시기) 창업학점제는 정규학기에 운영한다.

제5조(교과과정 편성) ① 창업지원단은 「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」에 따라 교육기구를 통해 교무처 교무과에 교과목 편성 요청을 하여야 한다.

② 창업현장실습의 교과과정 편성기준은 [별표]]과 같이 한다.

- 제6조(신청자격) ① 창업현장실습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 - 1. 해당 학기 등록하고, 2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
 - 2. 창업 관련 교과목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한 과목을 1개 이상 이수한 경우
 - 3.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(공동대표를 포함한다)로 지정되어 있거나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이사로서 위원회에서 공동창업자로 인정한 경우
 - ② [별표2]의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현장실습을 신청할 수 없다.

제7조(신청 및 선발) ① 창업현장실습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창업지원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창업현장실습 신청서: 별지 제1호서식
- 2. 창업현장실습 수행계획서: 별지 제2호서식
- 3. 사업자등록증(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)
- ② 창업지원단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업현장실습 학생을 선발하고, 그 결과를 교무처학사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제8조(교과목 개설 및 수강신청 등) ① 창업지원단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업현장실습 과목책임교수와 개설 대학(원)을 선정하고, 선정된 대학(원)을 통해 교무처 학사과로 개설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② 제7조제2항에 따라 선발된 학생만 창업현장실습을 수강할 수 있으며, 중도에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사일정에 따라 지정된 기일 내에 수강 취소를 하여야 한다.

제9조(학점인정 등) ① 창업현장실습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- 1. [별표1]의 이수시간 이행
- 2. 과목책임교수의 학기 중 4회 이상 창업현장실습 지도 및 현장점검 1회
- ② 창업현장실습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월별보고서(별지 제3호서식), 결과보고서(별지 제4호서식), 사업자등록증(또는 법인등기부등본)을 해당 학기 종강 15일 전까지 과목책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월별보고서는 별도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과목책임교수는 창업현장실습의 학점인정을 위하여 과목책임교수평가서(별지 제5호서식)를 해당 학기 종강 7일 전까지 창업지원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창업지원단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업현장실습 학점인정 대상자를 선정하고, 그 결과를 교무처 학사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0조(취득학점) ① 창업현장실습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다음과 같다.

- 1. 창업현장실습: 한 학기 최대 6학점(석사과정 3학점)
- 2. 창업현장실습을 통해 재학 중 취득 가능한 학점은 다음 각 목과 같다.
 - 가. 학사과정: 최대 9학점
 - 나. 석사과정: 최대 3학점
 - 다. 박사과정: 최대 6학점
 - 라. 석사 박사통합과정: 최대 9학점
- ② 창업현장실습으로 취득하는 학점은 학기당 취득학점에 포함된다.
- ③ 창업현장실습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학생의 소속 대학 (원)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제11조(성적) ① 창업현장실습의 성적은 급락(S/U)만 구분하여 표시한다.

② 창업현장실습에 선발된 학생이 창업 업종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"U"를 부여한다. 다만,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"S"를 부여할 수 있다.

부 칙 <2022. 11. 24>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 창업현장실습 교과과정 편성기준(제5조 및 제9조 관련)

교과목명	이수구분	이수시간	인정학점
창업현장실습 1	일반선택	6주(240시간)이상 12주(480시간)미만	3학점
창업현장실습 2	일반선택	12주(480시간)이상	6학점

[별표2] 창업현장실습 제외업종(제6조 관련)

- 1. 금융 및 보험업. 다만,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인정함.
- 2. 부동산업. 다만,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동산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인정함.
- 3. 숙박 및 음식점업. 다만,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숙박 및 음식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숙박 및 음식점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인정함.
- 4.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창업
- 5. 일반유흥주점업, 무도유흥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- 6. 그 밖에 학생 창업에 적합한 업종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

비고 :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.

창업현장실습 신청서

	성명	학번								
신청자	소속	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							
	휴대전화		이메일							
	업체명	대표자		개업연월	J 0 l		차어기	집참여형!	 =U	
창업	비세 6	내표사 개합인			32 01			B B D O		
현황	사업자등록번호		사업의종류(업태	종류(종목)						
	신청학기 학년도 학	7	신청학기 등특 □ 예	록(예정)	졸업여	정학기 학년	도	학기		
신청내역	활동주수 및 신청학점 □ 6주-12주(3학점) □ 12주 이상(6학점)									
	창업교과목 이수내역 교과목번호: 교과목명:									
개인정보	「개인정보보호법」등 관련 법률에 따라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.									
수집·이용 동의			□ 동의 □	동의하지	않음					
					성명:			(서명 또는	- 인)	
「서울대혁	학교 창업학점제 운영 기	디침」 제	제7조에 따라 위	와 같이 참	창업현경	당실습을	신청합니	니다.		
							년	웓	일	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										
서울다	학교 창업지원단 ⁻	장 귀혀	F}							
제출서류	 창업현장실습 수행 성적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(또는 									

■ 서울대학교 창업학점제 운영 지침 [별지 제2호서식]

창업현장실습 수행계획서

합점	신청기	자	성명	학번						
창업 한적 및 주요활동 (개요, 추진실적, 성과 등) 창업한장실습 수행계획 창업한장실습을 통한 성과 왕업한장실습을 통한 성과 월(활동주수) 월(주) 월(주)	업체인	명								
창업 헌장실습 수행계획 창업헌장실습을 통한 성과 월(활동주수) 월별 활동 계획 월(주) 월(주)			창업현장실습 신청목적							
수행계획 장업현장실습을 통한 성과 월(활동주수) 월별 활동 계획 월(주) 월(주)			창업 연혁 및 주요활동 (개요, 추진실적, 성과 등)							
월(활동주수) 월(주) 월(주) 월(주)			창업현장실습과 전공(다전공)과의 연계성							
월(주) 월(주) 월(주)			창업현장실습을 통한 성과							
월(주)	월(활동	주수)	월별	활동 계획						
월(주)	월(주)								
	월(주)								
	월(주)								
월(주)	월(주)								

■ 서울대학교 창업학점제 운영 지침 [별지 제3호서식]

창업현장실습 월별보고서(월)

. = -	성명		학번					
신청자	소속	대학(원)	학과(부)	전공				
업체명								
	당월 수행							
창업 현장실습 월별수행 결과	주요 추진							
	결과물(이	미지, 시제품 등)						
주차		세투	브 활동 내용					
1주								
2주								
3주								
4주								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확인자: 과목책임교수 (서명 또는 인)

■ 서울대학교 창업학점제 운영 지침 [별지 제4호서식]

창업현장실습 결과보고서

시키기	성명	성명					학번						
신청자	소속			대학(원)		학과(누	크)			전공		
과목	교과목번호	5		강	·좌번호			ī	.과목	명			
활동기긴	<u> </u>	년	월	일	~	년	월	일	(주)			
업체명													
창업현증 실습			수행계획										
수행결고 	결과물(이다	미지, 시기	데품 등)										
월(활동주=	`				월별	활동	내용						
월(²	5)												
월(-	5)												
월(²	5)												
월(2	5)												
「서울대학교 창업학점제 운영 지침」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.													
										Ļ	년 월	l	일
				신청인	<u> </u>						(서명	또는	인)
제출서류	사업자등	사업자등록증(또는 법인등기부등본) 1부											

창업현장실습 과목책임교수평가서

성명 학번												
신청자	소속 대학(원)						학과	(부)				전공
 업체명												
활동기간		년	월	일	~	년	월	일	(주)		
	시기(호	[차)	세부 지도 내용									
	년 월 (1회	일)										
창업현장실습 지도내역	년 월 (2회	일)										
1 " 1	년 월 (3회	일)										
	년 월 (4회	일)										
현장점검	수행일자 현장점검 세부 내용 및 검토의견											
수행내역	년 월	일										
	세부평기	항목	우수 보통						미흡			
	창업횔	동										
	현장점	l검										
창업현장실습	결과보	고										
평가내역	종합의	l견										
	최종평가 □ S(Successful) □ U(Unsuccessful))				
「서울대학교 창업학점제 운영 지침」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목책임교수평가서를 제출합니다.												
년 월 일												
소속												
직급												
과목책임교수 (서명 또는 인)												
서울대학교 창업지원단장 귀하												
제출서류	월별보고서, 결과보고서, 사업자등록증(또는 법인등기부등본)											